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102
----------	------

제안연월일 : 2022.2.10.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회부일	회의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3054	김희걸 의원	'22.1.25.	상정 · 심사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2.2.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3082	시장	'22.1.25.	상정 · 심사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2.2.10.)

-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2022.2.10.) 위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확대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19조의7 신설)
-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로 완화함(안 제54조제15항 신설)
-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함(안 [별표 4]제2호)
-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명시함(안 [별표 4]제4호머목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54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별표 4]사무명판제2호다목, 마목부터 자목까지, 거목, 너목,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사. 공공청사(동주민센터,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에 한함)
-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한함)
-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함)
-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러. 시장(市場)(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별표 4]사무명란제4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머.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제2호 각 목에 따라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19조의7(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⑯ (생 략)	<p>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⑯ (현행과 같음)</p>												
<u>&lt;신 설&gt;</u>	<p>⑯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p>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p>[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 무 명</th><th style="text-align: center;">관계법령</th></tr> </thead> <tbody> <tr> <td>1. (생 략)</td><td>○ (생 략)</td></tr> <tr> <td>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 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td><td>○ 법 제29조 · 제30조 영 제23조· 제25조</td></tr> <tr> <td>가. ~ 나. (생 략)</td><td>○ (현행과 같음)</td></tr> <tr> <td>다. 주차장(부지면적 <u>5천제곱 미터 이하</u>에 한하되, 개발 제한구역은 제외함)</td><td>○ -----</td></tr> <tr> <td>라. (생 략)</td><td>-----</td></tr> </tbody> </table>	사 무 명	관계법령	1. (생 략)	○ (생 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 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 제29조 · 제30조 영 제23조· 제25조	가. ~ 나. (생 략)	○ (현행과 같음)	다. 주차장(부지면적 <u>5천제곱 미터 이하</u> 에 한하되, 개발 제한구역은 제외함)	○ -----	라. (생 략)	-----
사 무 명	관계법령												
1. (생 략)	○ (생 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 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 제29조 · 제30조 영 제23조· 제25조												
가. ~ 나. (생 략)	○ (현행과 같음)												
다. 주차장(부지면적 <u>5천제곱 미터 이하</u> 에 한하되, 개발 제한구역은 제외함)	○ -----												
라. (생 략)	-----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명	관계법령
<p>마. 체육시설(부지면적 <u>3천제곱미터 이하</u>에 한하여, 개발 제한구역은 제외함)</p> <p>바. 공공공지(부지면적 <u>3천제곱미터 이하</u>에 한함)</p> <p>사. 공공청사(<u>동사무소</u>,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u>보건지소</u>로 <u>한정합</u>)</p> <p>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학교</u>의 전폐율·용적률·높이의 <u>변경 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u>에 한함)</p> <p>자. 문화시설(부지면적 <u>3천제곱미터 이하</u>의 시설로 <u>한정하되</u>, 전시시설, 국제회의 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p> <p>차. ~ 하. (생 략)</p> <p>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u>제외</u>)</p> <p>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u>3천제곱미터 이하</u>에 한함)</p> <p>더. (생 략)</p> <p>러. <u>시장(市場)</u>. 다만, 부지 면적 <u>3천제곱미터 이하</u>로 <u>한정한다.</u></p> <p>3. (생 략)</p> <p>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 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다만, 특별계획구역은</p>	<p>마. ----- <u>5천제곱미터 미만</u> -----</p> <p>바. ----- <u>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u></p> <p>사. ----- <u>동주민센터</u> ----- ----- <u>보건지소</u>에 <u>한함</u>)</p> <p>아. ----- ----- <u>학교</u> <u>시설</u>----- <u>변경</u> <u>결정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u>-----</p> <p>자. ----- <u>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u>, ----- ----- ----- ----- ----- 차. ~ 하. (현행과 같음) 거. ----- <u>제외함</u> 너. ----- <u>5천제곱미터 미만</u> ----- 더. (현행과 같음) 러. <u>시장(市場)</u>(부지면적 <u>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u></p> <p>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p> <p>4. ----- ○ -----</p>
사 무 명	관계법령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명	관계법령
제외한다). 나목부터 리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u>〈신 설〉</u>	제4항 조례 제18조
4의2. ~ 14. (생 략)	
사 무 명	관계법령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며.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u> <u>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u> <u>(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u> <u>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u> <u>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u> <u>제외하며, 시장이 결정</u> <u>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u> <u>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u> <u>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u> <u>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u> <u>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제2호</u> <u>각 목에 따라 사전동의가</u> <u>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u> <u>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u>
	4의2. ~ 1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